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박범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15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9. 1.

발 의 자 : 박범계 · 박찬대 · 최기상
윤관석 · 문진석 · 기동민
고용진 · 전용기 · 민형배
이개호 · 김승원 · 김수홍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형법」에 따른 범죄행위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규정하면서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학교 구성원 간 이견이나 갈등을 우려하여 교원 보호조치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고,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신고 규정이 없으며,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제지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의 분리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피해 교원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

있음.

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관할청 및 고등학교 각급학교의 장 또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리에게 침해행위 현장에 나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제지 및 피해 교 원과 침해행위를 한 학생을 분리할 의무를 부여하여 교육활동 침해행 위로부터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).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)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학교 등 관계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.

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의3(응급조치의무)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관할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

리는 지체 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제지
2. 교원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분리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5조의2(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)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학교 등 관계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</u> <u>④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.</u> <u>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</u>

<u><신 설></u>	<u>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</u> <u>제15조의3(응급조치의무) 제15조</u> <u>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</u> <u>위 사실을 알게 된 관할청 및</u> <u>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</u> <u>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</u> <u>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</u> <u>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지</u> <u>체 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현</u> <u>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</u> <u>치를 하여야 한다.</u> <u>1.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제지</u> <u>2. 교원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</u> <u>한 학생의 분리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